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단2107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주식회사 C

변론 종결2020. 2. 6.

판결 선고2020. 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 : D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용량 : 999kw

사업장 주소 : 충남 부여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계약금 : 3,000만 원

특약사항

- 본 계약은 F 태양광발전사업 PF 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 발전소 인허가를 진행하고 용량산출 개발행위 토목공사 컨설팅을 하기 위한 용역 계약이며 개발행위와 인허가 완료되면 F와 PF계약을 진행한다. 개발행위, 토목공사, 계통연계, 업무와 비용은 사업주 소관이며, 정책 변화 개발행위 인허가 등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됐을시 계약금은 반환되며(수수료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 사업주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원고 B도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발전소명을 'G 태양광발전시설공사'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용역계약(이하 위 가.항 기재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4. 16.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각 계약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소개한 I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얻으려 하였으나 2019. 1.경 위 회사로부터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개발행위인허가 등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 3.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면서 그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개발행위 인허가 등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에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은 개발행위의 불허가로 인해 그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수료 등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도 공사준비기간 동안의 담당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현장 출장경비, I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허가 준비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주식회사 J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금 등 합계 2,150만 원의 공제를 주장하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의 수수료 내지 경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정재